교통정책기본법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91

발의연월일: 2024. 7. 12.

발 의 자 : 엄태영 · 박충권 · 곽규택

조지연 • 조경태 • 임종득

박덕흠 • 김은혜 • 유상범

정연욱 · 김 건 의원

(11인)

제안이유

그간 교통정책은 단순히 교통 인프라 확충이라는 양적 측면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저출산·고령화, 도시권역 인구 집중, 지역 소멸 위기 등 여건 변화로 인해 교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정책의 패러다임도 교통서비스 제고라는 질적 측면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

또한, 현행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국가기간망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속가능교통, 대중교통의 육성 및 활성화, 교통안전 강화,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 모빌리티 활성화등 교통정책의 기본 원칙 및 정책 방향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통 정책과 관련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명확하게 규정하지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면서, 교통 정

책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의 기본적인 교통정책 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또한, 전국에 대한 교통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교통서비스의 개선과 고도화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수준을 강화하며, 교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교통, 지속가능 교통, 교통안전, 교통약자 이동편의, 교통기술, 모빌리티 등의 중장기적 차원의 기본적 교통정책 방향을 제시함(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 나. 교통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국가교통기본계획, 광역교통계획, 도교통계획, 시·군교통계획을 규정하고, 계획간 연계 강화 및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각 교통계획간 관계를 정립함(안 제13조 및 제14조).
-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교통정책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교통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 하며, 5년마다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 라.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의 교통정책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도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5년마다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함(안 제17조).
- 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군수는 시·군의 교통정책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군교 통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5년마다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함(안 제17조).
-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교통 관련 계획이 교통 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의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매년 교통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24조).
-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서비스의 개선과 고도화 등을 통해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교통서비스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수 있으며, 평가 결과 교통서비스의 개선 및 고도화 등이 필요한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자.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및 교통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교통위원회를 두며, 지방자치단체 소관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소속으로 지방 교통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교통정책기본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정책의 방향과 시행의 기본적인 사항 및 국민의 교통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향상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교통"이란 사람 또는 화물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행위, 활동, 기능 또는 과정 등을 말한다.
- 2. "교통서비스"란 사람 또는 화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데 요구되는 교통수단, 교통시설 및 정보등을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3. "교통수단"이란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자전 거·자동차·열차·항공기 및 선박 등을 말한다.
- 4.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철도·공항·항 만·터미널 등의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을 보조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 5. "교통체계"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통수단, 교통시설 및 교통운영과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교통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교통정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통합교통체계의 구축 및 기능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육상·해상·항공 등 부문별 교통체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교통체계 간에 효율성·통합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통합교통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교통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통합교통체계의 기능 증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교통의 균형발전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과 비수 도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균형 있는 교통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지속가능 교통기반의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저탄소 교통수단의 보급 및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교통 기반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대중교통수단 이용, 대중 교통서비스 개선 및 지원 등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필요 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8조(교통안전의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안전 확보, 교 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체계 확립 등 교통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 하여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교통기술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이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기술 개발·보급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가 실용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과 규제체계의 선진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1조(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이동성 증진을 위하여 모빌리티 수단·기반조성, 기 술도입·확산 등 모빌리티 혁신체계 수행과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12조(국제협력의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교통정책 개발, 전문인력 교류, 기술협력, 공동조사·연구 등 에 관하여 외국정부 및 기관과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3조(교통계획의 구분) ① 이 법에서 교통계획이란 교통발전을 위하여 교통정책이 지향하여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계획을 말한다.

- ② 교통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교통기본계획, 광역교 통계획, 도교통계획, 시·군교통계획으로 구분한다.
- 1. 국가교통기본계획: 국가의 효율적인 교통체계의 구축 및 장기적 인 교통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 2. 광역교통계획: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 관리 및 장기적인 교통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수립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 3. 도교통계획: 도 및 특별자치도의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 당 지역의 장기적인 교통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 4. 시·군교통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교통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 제14조(교통계획과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① 국가교통기본 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광역교통계획, 도교통계획, 시·군교통계획의 기본이 되고, 도교통계획은 해당 도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시·군교통계획의 기본이 되다.
 - ② 국가교통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계획보다 우선하며 기본이 된다.
 - 1. 「도로법」 제5조에 따른 국가도로망종합계획

-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 3.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 4.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 관련 계획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국가교통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국가교통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20년 단위로 국가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변경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 마다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 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검토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및 계획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받은 기본계획안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본계획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16조(기본계획의 수립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교통정책의 방향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교통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 2. 교통의 수요 및 공급 전망
 - 3. 도로·철도·해운·항공 등 교통수단별 교통정책·계획의 종합· 조정 및 연계
 - 4. 광역교통정책의 방향
 - 5. 도시 및 지역 내 교통정책의 방향
 - 6. 국가기간교통망 구축 목표 및 단계별 추진전략
 - 7.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구축전략
 - 8. 국가교통시설의 신설 확장 및 정비사업
 - 9.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 전환교통 촉진 등 지속가능 교통 물류체계의 발전 방향과 추진 전략
 - 10. 대중교통 활성화, 대중교통시설 설치·확충 등 대중교통정책의 방향과 추진 전략

- 11. 모빌리티 활성화 방안과 추진 전략
- 12. 교통약자의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 확충 및 지원
- 13. 교통서비스 모니터링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 14. 교통기술의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 15. 기본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부수되는 사항
- 제17조(도교통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교통계획을 20년 단위로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5년마다 도교통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도교통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1. 관할구역의 교통정책 기본목표 및 방향
 - 2. 관할구역에 대한 교통 수요 및 공급 전망
 - 3. 관할구역의 교통시설 배치ㆍ규모ㆍ설치 현황 및 전망
 - 4. 관할구역의 교통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지원 방안(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5. 관할구역의 시·군 간 교통수단의 연계 및 강화
 - 6. 도교통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 7. 그 밖에 관할구역의 교통정책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도교통계획 수립기준 및 작성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도교통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로, "도지사"는 "시장·군수"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은 "관계 행정기관"으로, "기본계획"은 "도교통계획"으로, "기본계획안"은 "도교통계획안"으로 본다.
- 제18조(시·군교통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는 기본계획 및 도교통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관할 구역의 시·군교통계획을 20년 단위로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는 5년마다 시·군교통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교통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교통의 특성 및 교통이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1. 교통정책의 목표 및 방향
 - 2. 교통수단간 수요 현황과 공급 전망
 - 3.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개선·확충에 관한 사항
 - 4. 교통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지원 방안(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5. 비수익 노선 대중교통수단의 현황과 향후 운행조정 및 지원 방향

- 6. 시 · 군교통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 7. 그 밖에 관할구역의 교통정책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시·군교통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도 및 시·군교통계획 수립의 효과)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제17조에 따른 도교통계획, 제18조에 따른 시·군교통계획에 다음 각 호의 계획 사항을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1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 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 지방교통 물류 발전계획
 - 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 방대중교통계획
 -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 5.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 제20조(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국가교통기본계획, 광역교통계획, 도교통계획 및 시·군교통계획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 또는 해당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

- 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교통계획 등의 확정·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도지사, 시장·군수는 제17조에 따른 도교통계획, 제18조에 따른 시·군교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은 후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 2. 시장·군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도지사는 승인 전 국 토교통부장관과 협의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교통계획을 승인받은 때에는 관계 행

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일반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시·군교통계획을 승인받은 때에는 해당 시·군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 제22조(교통계획의 평가 대상 및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교통 관련 계획이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수립되었는지를 평가(이하 "교통계획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② 교통계획의 평가기준은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교통정책 의 기본방향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교통계획의 평가) ① 제22조에 따른 교통계획평가 대상이 되는 수립권자는 해당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계획평가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요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통계획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국가교 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통계획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교통계획평가요청서 제출 시기, 제2항에 따른 교통계획평가 결과의 통보 절차 및 그 밖에 교통계획평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교통서비스 모니터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서비스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에 대하여 매년 교통서비스 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서비스 모니터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 집·분석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④ 교통서비스 모니터링 기준·방법, 결과의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교통서비스의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서비스의 개선과 고도화 등을 통한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교통서비스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교통서비스 평가"라 한다)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서비스 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통서비스 평가 결과 교통서비스 개선 및 고도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서비스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교통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교통서비스 평가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 등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통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 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교통위원회를 둔다.
 - ② 국가교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2. 교통계획의 평가 결과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개발사업 또는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시범사업을 포함한다) 등 국가교통 정책의 종합조정
 - 4.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 5. 그 밖에 국가의 중요 교통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27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된다.
 - ③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1. 당연직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 2. 위촉직 위원: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제28조(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국가교통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분야별 국가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 2. 국가교통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제29조(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지방교통위원회) ① 지방자체단체 소관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소속으로 지방교통위원회를 둔다.
 - ②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교통위원회 및 국가교통실무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제23조제3항 및 제25조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 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교통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7조에 따른 도교통계획 및 제18조에 따른 시·군교통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교통사업 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교통 관계 법령에 따른 지침·결정·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제4조(국가교통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계획은 이 법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계획	종전의 계획
국가교통기본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
	대중교통기본계획

-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 표의 오른쪽 칸의 계획에 관하여 종전의 해당 법률에 따라 공청회 또는 주민 의견청취 등을 거친 경우 당해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것으로 한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당 법률에 따라 계획 내용을 관보 등에 공고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것으로 한다.

- 제5조(도 및 시·군교통계획 수립의 효과에 관한 적용례) 제19조는 이법 시행 후 계획수립권자가 처음 수립하는 기본계획, 발전계획 등부터 적용한다.
- 제6조(국가교통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및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는 각각 제2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및 제3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본다.
-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 및 제110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및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이 법에 따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 및 제110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및 지방교통위원회에서 심의 중 인 사항은 이 법 제26조 및 제30조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 및 지방 교통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본다.
- 제8조(국가교통위원의 구성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 은 새로운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이 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 으로 본다.
- 제9조(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

시 종전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8조에 따른 국가교통 실무위원회의는 새로운 국가교통실무위원회가 구성 및 운영될 때까 지 이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교통실무위원회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6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111조제1호 중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각각 "국가교통기본계획"으로 한다.

②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9조제1항 본문·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 중 "기본계획"을 각각 "국가교통기본계획"으로 한다.

③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7조제1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기본계획"을 각각 "국가교통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대중교통

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